평생건강, 국민행복,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「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」 기간연장 결과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연장 필요성 증대 및 방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역지원 사업 기간연장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장기요양정보시스템(포털)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대상기관: 노인요양시설 등 '21.12월 기준 사업참여기관
나. 연장지원기간: **'21.12.31.(금)~ '22.1.28.(금) … 1개월**
다. 진행사항
1) 연장 대상자 등록
- 장기요양정보시스템(포털) 전산 퇴사일 수정(양로시설 제외)
2) 근로계약서 작성(재계약) … 근로계약서 사본 지사 제출. 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

수신자 ○○요양원 등 시설대표 귀하

과장	곽혜선	팀장	연가	부장	이영찬	실장	전결 12/24

협조자

시행 방역지원부-2535 (2021.12.24.) 접수 ()
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, 19층(반곡동, 국민건강보험공단) / http://www.nhis.or.kr
전화 033-736-4862 전송 033-749-9658 / queen27@nhis.or.kr / 공개

붙임2 **표준근로계약서**

기간제근로자(방역보조인력) 표준근로계약서

_____의 장(이하 "갑"이라 함)과 _____(이하 "을"이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2.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

○ 근무장소(부서) :

○ 업무 내용

① 시설소독, 청결유지, 면회실 관리, 출입관리 등 시설장이 정한 방역보조업무 수행
② 다만, 수급자에게 간호처치, 신체활동 보조 등의 직접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
(방역보조인력이 보유한 사격증 불문)

○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.

3.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

○ 근로시간 : 시 분부터 시 분까지(휴게시간 : 시 분부터 시 분까지)

※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(하루 8시간 주40시간, 하루 4시간 주20시간)에서 근로시간을 정하고,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,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

4. 근로일 및 휴일

○ 근무일 : 매주 5일 근무

○ 주휴일 : 1주 소정근로일 만근 시 주 1일 부여한다.(단, 주휴일은 일요일로 특정하되,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관별 사규나 근무편성표에 따른다)

- 주휴일 및 휴일에 부득이 근무시 24시간 전에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 사전대체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한다.

5. 휴 가

○ 연차 유급휴가는 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.

6. 보 수

○ "갑"은 월 *(*유급 인정시간 X 9,180원)* 에 해당하는 보수를 익월 1일(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산정)에 "을"에게 지급한다.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* **21.12.31.은 유급 인정시간 *X 8,750원*, *22.1월은 유급 인정시간 X 9,180원***

○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고용보험료 중 "근로자" 부담분 및 제세공과금,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제한다.

○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대하여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.

○ 조퇴.지각.외출은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또는 보수에서 정산하며, 누계 ○* 시간은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.

* (8시간근로자) 8시간, (4시간근로자) 4시간

○ 보수는 "을"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. (예금계좌번호 :)

7. 근로계약서 교부

○ "갑"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"을"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17조)

8.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, 행정규칙,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년 월 일

(갑) 주 소 : (전화 :)
기관명 :
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

(을) 주 소 : (전화 :)
주민등록번호 :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<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확인 및 근로자 확인사항 숙지>… 필수

교 부 일 시:	수 령 자:	(서명)
확 인 일 시:	근 로 자:	(서명)

※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확인 및 근로자 확인사항 숙지는 반드시 작성

【「코로나19관련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사업」 근로자 확인사항】

1. 「코로나19관련 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사업」의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 시설장은 방역보조 근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, 입·퇴사날짜, 근로계약서, 출퇴근확인서 등 방역지원 사업 근무 기간의 근태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.

   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(관리운영기관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2. 또한 방역보조인력은 감염병에 취약한 연령층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기관에 배치되므로, 입소자와 종사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

   - 시설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필수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, 예방접종 동의여부)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며,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도 전달됩니다.

   ※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(정보제공요청 및 정보확인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3. 위의 사항을 확인 후 <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확인 및 근로자 확인사항 숙지>에 서명하기 바랍니다.